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2045
- 발 의 자 : 이명희 의원 외 11명
- 발 의 일 : 2017년 8월 14일
- 회 부 일 : 2017년 8월 17일

2. 제안이유

본 조례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, 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급식단체를 포함하는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급식관련 용어 및 정의가 명확하도록 수정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함(안 제3조).
- 다.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함(안 제6조, 제12조, 제18조).
- 라. 조·항·목의 순서를 바로잡고,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함(안 제2조, 제3조, 제17조).
- 마.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추가함(안 제16조).

바. 구청장의 권한 침해 부분을 삭제함(안 제17조, 제18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
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 결과(2017.8.22.~ 8.29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용어와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고, 공공급식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< 개정안의 주요내용 >

- 용어 및 정의 수정
-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.
-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함.
- 조·항·목의 순서를 바로잡고,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함.
-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추가함.
-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.

※ 본 조례는 어린이집,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, 급식 질의 저하, 농촌경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도농상생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.

가. 용어의 조문의 수정 및 보완

- 안 제1조 및 제2조의 용어 변경은 다양한 형태(독거노인 도시락 급식 등)의 급식을 포괄하기 위해 ‘단체’라는 용어를 삭제하고,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한 것이며,
- 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‘우수한 식재료’는 농약과 유해물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‘우수 식재료(GAP)’와 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,

- 안 제2조 제3호 바목은 제3호 중 마목이 누락되어 있어, 조·항·목의 순서에 맞게 바로 잡고, 제3조제8호는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※ 지난 4월10일 개최되었던 토론회에서도 용어의 재정의 및 통일성 문제가 제기되었음.

※ 안 제2조제3호, 제5조제1항, 제6조제3항의 ‘우수 식재료’는 토론회에서 제초제·비료 등을 과학적 관리방법에 의해 사용하여 재배된 작물(GAP)과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친환경 식재료와 의미상 혼돈을 줄 수 있는 바, 용어를 ‘우수한 식재료’로 수정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.

- 안 제6조제2항, 제12조, 제18조제1항은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.

	인용조항	내 용	개정필요
안 제6조제2항	제11조	공공급식위원회	제9조
안 제12조	제13조제4항	위촉직 위원	제11조제4항
안 제18조제1항	제21조	공공급식센터의 설치	제17조

나. 위원회 운영

-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으로 변경하고,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 시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다. 시장의 책무의 변경 및 자치구청장의 권한

- 안 제3조제5호는 조례 중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바,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에 식재료 안전성 관리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- 안 제17조제3항은 구청장이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시장이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침해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
전 문 위 원	김 태 한
입 법 조 사 관	정 찬 일